



## 현금영수증 관련 자주하는 질문



**Q.**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을 받은 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았으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더라도  
현금거래일부터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Q.**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여야 하는 금액 기준은?

**A.**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할 경우 거래 상대방의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급하여야 하며, 건당 거래  
금액은 소비자가 사전에 계약내용과 거래금액을 인지(약정)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은  
경우에도 동일거래로 나누어 지급받은 대가를 합산합니다.

(예) 수강생이 수학과 영어 과목 인터넷 강의를 수강신청하고(약정)  
총 수강료 16만원을 온라인계좌이체한 경우에는 발급의무  
기준금액인 10만원을 초과하므로 해당 거래는 상대방의  
발급요구가 없어도 발급해야 함

**Q.** 거래일과 현금을 받은 날이 다른 경우 언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까?

**A.**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지급받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대금을 나누어서 지급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는 것입니다.

(예) 총 거래금액 50만원을 5회에 걸쳐 10만원씩 지급받는  
경우 10만원씩 지급받는 시점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함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http://www.hometax.go.kr)

2017.05



## 중고자동차 소매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출장음식 서비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되어 해당 사업자는  
2017.7.1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① 2017년 의무발행업종 확대

2017.7.1부터 의무발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중고자동차 소매업 등  
5개 업종을 포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 ②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굵게 밑줄친 업종은 2017.7.1부터 미발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업종입니다.

구 분	업 종
사업 서비스업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 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관세사업, 기술사업, 측량 사업, 공인노무사업 등 전문직
보건업	종합병원, 일반병·의원, 치과병·의원, 한병병·의원 기타의원, 수의업
음식숙박업	일반·무도유릉주점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b>출장음식 서비스업</b>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b>스포츠 교육기관</b>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	골프장 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산후조리원,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디아이트센터 등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 미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결혼사진 및 비디오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의류입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소매업,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전세버스 운송업, 기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안경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 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니라 실제  
사업내용에 따릅니다

### ③ 발급 시 주의사항

◎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는 거래일부터 5일 이내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무기명발급할 수 있습니다.

\* 무기명 발급분은 흠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1-1)에서  
「승인번호, 거래 일시, 거래금액」을 입력하면 실명전환 가능

### ④ 발급의무 위반 시 제재

◎ 현금영수증기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발급하지 않은 금액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하였으면 세금도 추징하게 됩니다.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원 미만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도 거래상대방이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위반

구 분	발급의무 위반	제 재
미발급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부과
발급거부	10만원 미만 현금거래에 대해 발급요구 하였음에 도 거부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등	1차 위반 발급거부금액의 5% 가산세 부과
		2차 위반 가산세 5%+발급 금액의 20% 과태료 부과

※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소비자와 합의 하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미발급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 ① 가맹점 가입기한

○ 의무발행업종 개인사업자와 소비자상대업종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 없이 개업일, 해당 업종개시일 등 가입요건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가맹점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  
소매업, 음식업, 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

### ② 가맹점 미가입시 제재

○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는 미가입 기간의 소비자 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포함



### ③ 가맹점 가입방법

#### ■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한 가입방법

신용카드단말기 설치업체에 의뢰하여 단말기를 설치함으로써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 발급사이트를 이용한 가입방법

아래 현금영수증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현금영수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상 호	홈페이지	연락처
(주)케이티	www.hellocash.co.kr	02)2074-0340
(주)엘지유플러스	taxadmin.uplus.co.kr	1544-7772
한국정보통신(주)	www.kicc.co.kr	1600-1234
퍼스트데이타코리아(유)	www.moneyon.com	1544-7300
(사)금융결제원	www.kftcvan.or.kr	1577-5500
나이스정보통신(주)	taxsave.nicevan.co.kr	02)2187-2700

#### ■ 국세상담센터 ARS전화를 이용한 가입방법

☎126 ... ①번(홈택스상담) ... ①번(현금영수증) ... ②번(상담센터 연결) ... ①번(한국어) ... ④번(가맹점현금영수증 발급서비스) ... 사업자번호(10자리) ... 비밀번호(4자리)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13자리) ... 비밀번호(4자리) ... ①번(가맹점 가입)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스티커 부착 의무

### ■ 가맹점 스티커 부착 안내

현금영수증가맹점은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하며, 의무발행업종 가맹점은 청색 스티커를, 의무발행 업종이 아닌 일반가맹점은 주황색 스티커를 부착하면 됩니다.



### ■ 스티커 부착 위치

#### ▶ 계산대가 있는 사업장

계산대나 계산대 근처의 벽·천정(천정걸이 사용) 등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 계산대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 출입문 입구나 내부에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는 곳

### ■ 가맹점 스티커 미부착 시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24백만원 이상)이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스티커는 관할 세무서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시 혜택 및 미발급 신고 제도

### ① 현금영수증 발급에 따른 가맹점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전연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의 1.3%(음식·숙박업의 간이 과세자는 2.6%)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세액공제 한도 : 500만원

○ 또한, 개인사업자는 전화망을 이용하여 5천원 미만인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금액에 대해 건당 20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흠텍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소액결제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포상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거나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한 경우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 공급자 관할 세무서의 사실확인을 거쳐 미발급 또는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포상금 지급한도 : 건당 50만원, 동일인 연간 200만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 대한 미발급신고는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방법 :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등 거래증명 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한 신고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흠텍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